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225호

나. 발 의 자 : 김경 의원 외 11명

다.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제3항은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등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6개소의 서울시립박물관은 모두 보조건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을 관람 제한 대상으로 정하면서, 장애인 보조건의 경우에 대한 예외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보조건의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오인될 여지가 있는바, 장애인 보조건의 경우 관람 제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건의 경우 동반출입을 허용함(안 제7조제4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관람 제한 대상인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1)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건을 동반한 경우 예외적으로 관람을 허용할 것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정의 필요성

-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대한 장애인 보조건의 동반 출입 보장 규정은 1999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1) 제40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

③ 누구든지 보조건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건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건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건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이후 2012년 개정을 통해 보조견 훈련자 및 자원봉사자까지 동반 출입 보장 대상을 확대²⁾하였고, 2024년에는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³⁾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왔음.

- 따라서 현행 조례 역시 이러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람 제한 대상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함을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반려동물 동반 관람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고자 함.
- 현재 서울특별시립박물관(6개소)⁴⁾에서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이미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기보다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조례 규정을 현행화하는 조치로 판단됨.

2)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 다만, 이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혼동이나 오해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박물관 운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며,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삭제	3. 삭제
4. 반려동물을 동반한 <u>사람</u>	4. ----- <u>사람(다만,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김예영(2180-8114)
------	----------------	-------	----------------

의안번호
3225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김경 의원(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당없음				
주요내용	<제안 이유> ○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서울시립박물관 출입시 제한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주요 입법 요지> ○ 장애인 보조건의 경우 동반 출입을 허용함(안 제7조제4호). <table><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tr><td>제7조(관람의 제한) <생략> 4. 반려동물을 동반한 <u>사람</u></td><td>제7조 <좌동> 4. 반려동물을 동반한 <u>사람</u>(다만, 장애인이 보조건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td></tr></table>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람의 제한) <생략> 4. 반려동물을 동반한 <u>사람</u>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람의 제한) <생략> 4. 반려동물을 동반한 <u>사람</u>	제7조 <좌동> 4. 반려동물을 동반한 <u>사람</u> (다만, 장애인이 보조건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추진경과	○ '25. 10. 20.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발의자: 김경, 김기덕, 유정희 등 12명								
부 서 검 토 의 건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현재 전(全) 서울시립박물관(6개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시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시 시민들이 혼동이나 오해의 여지가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이 적정								
대응방안	○ 이견 없음								
상 임 위 처 리 결 과									
담당부서	박물관과	팀장	박성은(☎2133-4183)	담당	김숙영(☎4199)				